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의 회
제286회 제1차 정례회 (2026. 9.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경 제 위 원 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 하 나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26-80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6년 8월 21일(금)
라. 위원회 회부일자: 2026년 8월 24일(월)

2. 제출사유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직원의 결격사유 정비(안 제11조)
나. 회계감사인 선정 방식을 구청장 '지정'에서 '선임'으로 변경(안 제3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제66조(결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6. 7. 16.~2026. 8. 5. (제출된 의견 없음)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검토보고

가.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

○ 동 조례 개정안은 2026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6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이번 개정안은 직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규정을 신설·보완하고 회계감사인의 선임 절차를 강화한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사에 관한 같은 법 제60조 및 제66조를 준용받으므로, 조례상 종전 규정을 현행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종전 조례는 결격사유를 임원에게만 적용하고 회계감사인을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원에게도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회계감사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도록 한 현행 법률과 문언상 불일치가 존재함.**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임직원의 결격사유 정비(안 제11조)

○ 법 제60조는 직원에게도 지방공무원 수준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적용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한 것임. 이는 지방공단 업무의 공공성과 채용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개정안은 개별 결격사유를 조례에 반복하여 열거하지 않고 법 제60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여, 향후 상위법 개정 시 조례와의 불일치 가능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적정함.

○ 다만 법 제60조[1]의 직원 결격사유는 모든 결격사유가 아니라 제1항제3호, 즉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됨. 따라서 실제 채용·인사 운영에서는 임원과 직원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1)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15., 2025. 1. 7.>
1. 삭제 <2019. 12. 3.>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5. 12. 15.>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3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5. 1. 7.>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5. 1. 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 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25. 1. 7.]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60조에 따른다.

2) 회계감사인 선임 및 결산 절차 정비(안 제33조)

○ 법 제66조는 결산서 작성, 회계감사, 구청장 보고·승인의 순서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를 제2항과 제3항으로 분리하여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타당함.

○ 회계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 중에서 선임하게 되며, 법 제66조제4항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구청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 마포구는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음. 규칙안은 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부터 제5조), 회계감사인 선임절차 및 계약 등(안 제6조부터 제8조), 운영세칙(안 제9조)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결산) ① (생 략)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임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계감사 보고서 2.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3) 부칙 검토

○ 개정안 부칙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의 직원 결격사유는 조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사항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제60조가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준용됨으로써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임. 따라서 조례 시행 전후의 적용 관계는 상위법의 본칙과 부칙[2]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조례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더라도 적용상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3조의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적용 시점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3]에서 공단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법률 제20655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공사의 직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법률 제20868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제35조의2 및 제66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또한 입법예고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4]에서도 2026사업연도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구체화하고 있음.

○ 따라서 직원 결격사유는 상위법에 따라, 회계감사인 선임의 적용 시점은 상위법 부칙과 관련 규칙안에 따라 각각 판단할 수 있으므로, 조례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공단 직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기준을 정비하고, 회계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지정 방식에서 법정 선임 절차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안 제11조와 제33조는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며, 직원 결격사유 및 회계감사인 선임의 적용관계도 상위법과 관련 규칙안에 따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조례 부칙에 추가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의 입법예고(2026. 7. 16.~8. 5.)를 마친 만큼, 향후 규칙 공포와 위원회 구성, 회계감사인 모집·평가 및 계약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6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6사업연도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1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1.〉

〔전문개정 2011. 8. 4.〕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지방직영기업"으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5. 4. 1.〕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15., 2025. 1. 7.〉

1. 삭제〈2019. 12. 3.〉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2015. 12. 15.〉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3호는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25. 1. 7.〉

③ 공사의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신설 2025. 1. 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개정 2025. 1. 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 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 1. 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25. 1. 7.〕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4. 1.〉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5. 4. 1.〉

1. 회계감사 보고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 4. 1.〉

⑤ 회계감사인의 자격 제한, 회계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할 사항, 회계감사인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인"으로, "회사"는 "공사"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제10조"는 "제66조제2항"으로 본다. 〈신설 2025. 4. 1.〉

〔전문개정 2011. 8. 4.〕